

2022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
-지역혁신형(1유형)-

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사업안내서

2022. 2.

- 목 차 -

I. 개요	1
1. 배경 및 목적	1
2. 사업개요	1
II. 지원대상 및 요건	2
1. 지원대상	2
2. 기업요건	2
3. 지원제외 기업	2
4. 청년요건	4
5. 지원제외 청년	4
III. 지원내용	5
1. 지원기간	5
2. (참여기업) 청년 인건비	5
3. (참여기업·청년) 추가지원금	6
4. (참여청년) 청년 인센티브	6
5. (참여청년) 지식재산 교육과정	7
IV. 지원절차	7
1. 참여신청	7
2. 선정평가	7
3. 청년채용	9
4. 지원금 신청 및 지급	9
V. 지도점검	12
1. 의견수렴	12
2. 정기·특별점검	12
3. 사후관리	12

I | 개요

1. 배경 및 목적

- (배경)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년일자리 창출 필요성
 - 코로나 19의 본격적인 확산이후, 전 영역으로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고, 언택트(Untact) 서비스가 새로운 기업경쟁력으로 인식
 - 이에,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 속에 변화하는 시장에 발맞출 수 있는 비대면·디지털 직무의 청년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증대
 - (목적)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및 청년일자리 창출
 - 지식재산 경영기반으로 변화하는 기술시장에 대응하고, 청년근로자의 IP*기반 문제해결능력 함양으로 기업과 청년의 동반성장 도모
- * IP(Intellectual Property) : 지식재산권의 약자로 특허, 상표, 디자인 등을 통칭함

2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지원사업
 - *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(1유형, 지역혁신형)
- 사업목표 : 청년 미취업자 24명 취업
- 사업기간 : 2022년 1월 ~ 2022년 12월(3년간 계속지원 예정)
 - 인센티브 지원기간 : 2024년 5월 ~ 2025년 2월(3년차)(예정)
- (주최기관) 행정안전부, 인천광역시
 - 사업 시행관련 총괄 및 조정
- (주관기관) 인천지식재산센터
 - 사업홍보, 접수 및 선정, 지원금 교부
- (참여대상) 기업 및 청년
 - 참여기업 : 사업신청 및 선정이 완료된 지역 중소기업, 청년인력 신규채용 주체, 인건비 및 추가지원금(IP권리화) 지원 대상
 - 참여청년 : 참여기업에서 당해연도에 신규로 채용을 완료(예정)한 대상자, 추가지원금(직무교육)/IP교육/인센티브 지원 대상

1. 지원 대상

1-1. 인천 지역특화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지역 중소기업

- 청년인력을 비대면·디지털 관련 직무로 신규채용
 - * 사업 참여유형(p3) 참고

1-2.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채용된 미취업 청년

- 채용일 기준 미취업자(실업자·비경제활동인구) 및 이에 준하는 자

2. 기업 요건

2-1. 참여기업은 사업 신청 및 참여확정(선정통보) 이후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을 1개월 이내 신규 채용하여야 함

- 단, 참여확정 된 기업이 '22. 01. 01 기준 사업요건에 부합하는 청년을 이미 채용완료 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(소급지원)으로 봄

2-2. 채용 청년의 직무는 본 사업의 참여유형(지침 05p)에 부합하는 비대면·디지털 관련 직무여야 함

- 단, 단순 업무가 주가 되는 행정·관리직은 제외함

3. 지원제외 기업

- 참여 신청일 또는 참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참여를 배제함

3-1. '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간 중복참여의 경우

- 지역혁신형(1유형), 상생기반대응형(2유형), 지역포용형(3유형) 간 중복불가
 - * 본 사업의 유형인 '지역혁신형'과 타기관 사업이 동일유형인 경우 중복참여 가능
 - 단, '21년 기존유형과 '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

3-2.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경우
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(체불사업주 명단 공개)
 - *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→ 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
- 3-3.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 - 보조금 환수, 제재부가금 부가 대상 등
- 3-4.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- 3-5.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
- 3-6. 기타 사업취지에 비추어 부적합한 경우

<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유형>

□ 인천형 뉴딜

- 개요 : 인천의 도시문제 해결과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표과제
 - ① 디지털 뉴딜 : ▲데이터·네트워크·인공지능 산업분야, ▲항공·로봇·VR/AR 산업분야, ▲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기존 산업분야(제조업 소상공인 등 비대면/온라인 사업 확장이 필요한 분야), ▲스마트 산업분야(도시·시민안전·에너지·교통)
 - ② 그린뉴딜 : ▲신재생 에너지·친환경 산업분야(모빌리티·도시인프라), ▲자원순환대기관리·물 관리 산업분야, ▲청정해양서식지·해양생태계 복원보호·친수공간 산업분야, ▲첨단 그린기술 및 제조업 친환경 전환 산업분야
 - ③ 바이오뉴딜 : ▲바이오 산업분야
 - ④ 휴먼뉴딜 : ▲디지털 사각지대 해소·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산업분야, ▲취약계층 복지·시민 건강증진 산업분야

□ 인천 8대전략 산업

- 개요 :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천의 성장동력으로서 8대 전략산업 분야
- 분야 : 항공, 로봇, 물류, 뷰티, 첨단자동차, 바이오, 관광, 녹색기후금융 산업분야

□ 비대면 직무

- 개요 : 홈페이지·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·관리·운영에 관한 직무
- 예시 : 웹 서비스 기획, UI/UX 디자이너, 영상 기획·제작자, 온라인 플랫폼 관리자 등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수행하는 업무

□ 디지털 직무

- 개요 :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 기술적 토대가 되는 연구개발에 관한 직무
- 예시 : 응용프로그램·어플리케이션·인공지능·AR/VR 등 프로그램(시스템) 연구개발자, 빅데이터·인공지능·사물인터넷·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연구개발자, 기타 참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수행하는 업무

4. 청년 요건

- 4-1. '22. 01. 01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
 - '82. 01. 02 이후 출생인 자
- 4-2. 사업 참여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한 자
 - 타 지역 거주자는 채용일 또는 참여 확정일로부터 2개월 내 전입
- 4-3. 근로조건이 다음 내용에 부합하는 자
 - (근로계약) 정규직(전환형)* 근로계약(참여기업과 직접계약)
 - *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- (보험적용)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 가입
 - (근로시간) 소정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 이하
 - (임금수준) '22년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
 - (근태관리) 지문 시스템, 출퇴근 근로카드 등에 의한 근태 관리

5. 지원제외 청년

- 채용일 또는 참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참여를 배제함
- 5-1. '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의 경우
 - 참여청년 1명에 대해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적용 불가
- 5-2. 채용일 기준 최근 2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연속 참여한 경우
- 5-3. 채용일 기준 해당 청년이 최근 1년 이내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현 고용기업의 사업주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
 - 계약직,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하고 있던 경우 등
- 5-4.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·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
- 5-6.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- 5-7. 기타 사업취지에 비추어 부적합한 경우

1. 지원 기간

- 1-1. 기업이 참여확정 이후 1개월 이내에 청년인력 신규채용을 완료한 경우,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함
- 참여기업 및 청년의 중도포기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속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, 지원을 종료하도록 함
 - 참여확정 이전 사업요건에 부합하는 청년을 기업이 이미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시점부터 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지원금을 산정함
 - * 사업예산에 따라 추가선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지원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년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(예산범위 내 지원실시)

1년차	2년차(계속)	3년차(계속)
청년 인건비, 추가지원금	청년 인건비, 추가지원금	청년 인센티브

2. [참여기업] 청년 인건비

- 2-1. 신규채용 청년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
- 채용인력 1인, 월 180만원 한도, 최대 2년간
 - 매월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후 참여기업에 인건비 지원금 지급
 - * 단, 채용된 청년이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함
- 2-2. 인건비 지원금 산정기준
- 기업은 청년의 월 임금을 최소 2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이는 기타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으로 한함
 - * 기업부담분 공제세액(4대 사회보험료 및 기타)의 경우 기업에서 자체부담
 - 지원금은 월 기본급 중, 기업부담금 10%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함
 - * 지원금 = 월 기본급 - 기업부담금(월 기본급의 10%)

<인건비 보조율(지급예)>

(단위 : 원)

월 지급액(기업→청년)	지원금액(기관→기업)	기업부담금	비고
2,000,000 기준	1,800,000	200,000(10%)	인건비 10% 기업부담
2,000,000 초과	1,800,000	200,000 ↑ (10% ↑)	초과분 기업부담

3. [참여기업·청년] 추가지원금

3-1. 기본지원 이외, 다음 내용에 대해 추가지원금 지급

-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, 연간 총 300만원, 최대 2년간
- 추가지원금 활용계획* 및 기업의 선 지출이후 참여기업에 추가지원금 지급
- * 지원금액 이내,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의 협의로 지원금 활용계획 작성

① 참여청년 역량강화 비용지원

- 직무관련 전문교육 및 자격취득 등 비용지원
-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 또는 현장직무교육 등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

② 참여기업 지식재산권(IP) 확보지원

- 기업의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비용 지원
- 특허, 실용신안, 상표 디자인에 대한 출원 및 등록비 등
- * 선행기술조사, 중간사건(OA), 연차료 등 권리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

4. [참여청년] 청년 인센티브

4-1. 사업 3년차 참여청년 대상 청년 인센티브 지급

- 연간 총 1,000만원 이내(분기별 250만원)
- 사업 3년차 해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분기별로 균등하게 1년간 참여청년에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

4-2. 인센티브 지급기준

- 사업 참여기업에서 2년 근무*
- * '재직기간'은 사업참여 기간만으로 산정(참여 전후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)
- 참여청년이 지역 내에서 정규직 전환(유지) 또는 창업

4-3. 제한사항(인센티브 지급중단 또는 종료)

-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불가
- 참여청년이 인센티브 지급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
- 참여청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(인천→타지역)
- 3년차 해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기간 동안 미취업자인 경우

5. [참여청년] 지식재산 교육과정

5-1. 참여청년이 변화하는 시장사회에서 업무수행 간 지식재산을 통해 문제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IP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
- (기본교육) 참여청년 IP기본교육 지원(10시간)
- (심화교육) 참여청년 IP심화교육* 지원(6시간)

*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석 실습 등 IP기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과정

IV | 지원절차

1. 참여신청

1-1.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메일로 제출

- 기업은 사업 참여유형을 참고하여 기본 서지사항과 지역특화 관련성, 청년채용 구체성, 기업 성장성 등을 신청서에 상세히 작성

* '사업 참여 신청서(서식1, 2)'

- 기업 대표자 확인사항*, 사업 참여 및 청렴이행 동의서**를 확인하여 제출

* '참여자(대표자) 확인사항(서식3)'

** '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, 청렴이행 협약 등 동의서(서식4)'

- 기업은 신청서 하단 첨부서류 목록(필수, 선택)을 참고하여 증빙제출

* 신청서 및 자료제출 :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담당자(ljk@incham.net)

2. 선정평가

2-1. 정량평가(1차)

-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지원요건 등 적격여부 확인
- 정량사항 및 가·감점사항에 대해 서면평가 실시

2-2. 정성평가(2차)

- 정량평가 결과, 고득점 순으로 사업 목표인원 최대 2배수인 기업에 대해 선정심의위원회 정성평가 실시
- 선정심의위원회는 기업경영 및 고용, 지식재산권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

또는 유관기관 담당자 등 내·외부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실시

2-3. 평가결과에 따른 처리

- 총 평가점수 110점(가점포함) 만점 중,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
- 목표인원 외 차 순위는 예비선정하여 향후 추가선정 여부 검토
- * 추가선정 대상자 또는 추가모집공고 대상자는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

2-4. 심사기준 및 배점(안)

구분	심사기준		배점	심사항목
정량 (40)	기업경영 *최근1년	매출액	10점	- 100억 이상(10), 100억 미만~10억 이상(5), 10억 미만(3)
		부채비율	10점	- 100%미만(10), 100%이상~250%미만(5), 250%이상(3)
	기술경영	연구소보유	10점	- 기업부설연구소(10), 연구전담부서(5), 없음(0)
	지식재산경영	지재권보유	10점	- 5건 이상(10), 3건 이상(5), 1건 이상(2), 없음(0) * 산업재산권(특허, 디자인, 상표) 등록 건에 한함
정성 (60)	(청년·기업) 지역특화 관련성		20점	- 참여기업의 지역특화산업 관련성 - 참여청년의 비대면·디지털 직무내용 관련성
	(청년)채용 구체성		20점	- 신규채용에 대한 필요성 및 직무수행계획 구체성 -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인적관리 계획
	(기업)기업 성장성		20점	- 참여기업의 사업아이템 및 사업 분야에 대한 향후 성장성 및 비전 등 시장경쟁력 평가 - 지식재산권 경영 및 기타 기술경영 사항 평가
가점 (10)	청년친화기업		10점	- 청년친화강소기업('21, '22 기준)*고용노동부 선정
감점	동일유형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여부		-10점	- (사업장)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연속 참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(해당청년 정규직 유지 시 예외)
			-10점	- (사업장) 이전 사업 참여 중, 채용 후 6개월 이내 참여청년의 중도포기(중도퇴사, 이직 등) 건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
합 계			100점(가점 포함 110점)	

- 기업경영사항 평가 시, 신규창업기업('21, '22년)이 사업운영으로 인한 발생 비용이 없거나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할 경우 평균 점수로 평가하도록 함
- * 매출증가율 5점, 부채비율 5점
- 평가결과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세부 사업안내, 유의사항(사업요건, 부정수급 등), 향후일정 등 안내실시

3. 청년채용

- 3-1. 참여기업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인력을 사업 참여확정일 이후 1개월 이내 채용완료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
- 기업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채용청년에 대한 정보를 제출양식*에 맞추어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
- * '채용자 명단 통보서(서식5)', '청년 개인정보 동의서(서식6)'
- 3-2.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후 주관기관-참여기업-참여청년 3자 미팅을 실시하고, 참여청년을 최종확정함
- 사업요건 검토, 세부 사업안내, 의견수렴 등 실시
 - 참여청년 웰컴키트(근로자 업무상 필요용품 등) 제공
- 3-3. 참여청년이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,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함
- 참여기업은 1회에 한하여 퇴사자로 인한 대체채용이 가능함
 - 대체채용은 참여청년의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함
 - 상기 사항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을 임시 중단하며, 더 이상 사업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종료를 통보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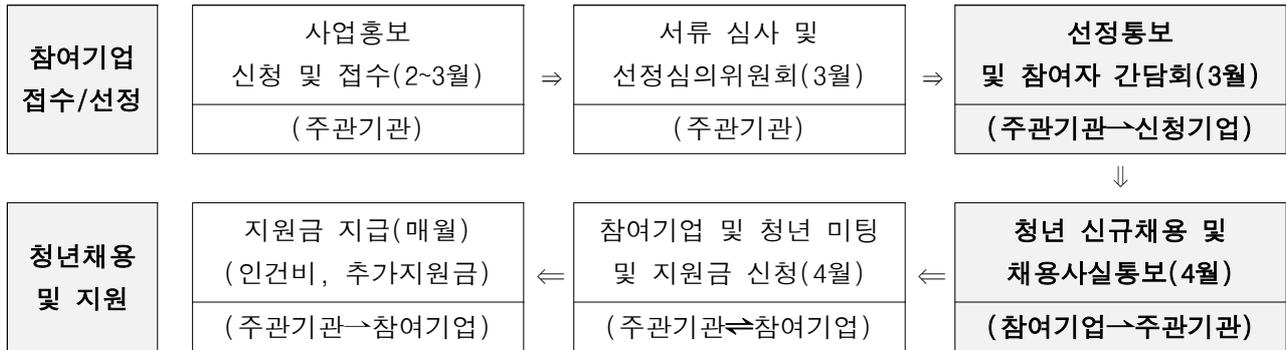
4. 지원금 신청 및 지급

- 4-1.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인건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
- 청년의 월간 근로사항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 및 수행업무현황을 작성하고 이체확인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
 - 인건비 지원금은 참여기업의 계좌로 지급함
- 4-2. 사업 참여확정 이후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추가지원금 신청서*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
-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추가지원금 내용을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함
 - 추가지원금 신청내용에 따라 연간 계획을 추진하고, 선 지출에 대한

증빙을 바탕으로 기업에 지원금 지급

* 참여청년 직무교육의 경우, 기업명의를 결제수단을 활용하여 지출하도록 함

<지원절차>



4-3. 사업 3년차 참여청년에 대해 청년 인센티브 지급

-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청년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- * 지원가능금액, 신청방법 등 별도안내
- 인센티브 지원금은 분기별로 청년에게 직접지급
-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(p11) 참고

4-4. 참여기업 또는 참여청년이 선정 이후 사업 운영지침 등을 위반하거나 사업 참여요건에 비해당되는 경우, 사업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가 가능함

4-5.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의 경우 사업예산 내 지원가능 함

<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>

- ▶ (지급목적) 참여 청년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유도
- ▶ (지급대상) 지역혁신형, 지역정착지원형 사업 참여 청년
- ▶ (지급금액) 1년간 총 1,000만원 (분기별 250만원)
- ▶ (지급조건) 인센티브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분기별로 균등하게 1년간 지급
 1. 지역 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2년 근무
 2. 청년이 지역* 내에서 정규직** 전환(유지) 및 창업
 - * '지역' 은 시도 사업의 경우 시도, 시·군·구 사업의 경우 시·군·구를 의미
 - ** '정규직' 은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'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' 를 의미
- ▶ (중복제한)
 - '청년내일체움공제' 의 정부지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나,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이 인센티브 지급액(1,000만원)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, 인센티브 금액과 정부지원금의 차액 만큼 지급 가능 (예: 중도해지 환급금이 200만원인 경우, 인센티브 800만원 분기별 지급)
- ▶ (지급종료)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
 - 정규직 전환 또는 취업 후 (인센티브 지급 기간 중) 퇴사한 경우
 - * 1회에 한하여 퇴사 후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재개 가능
 - 사업종료 후 취·창업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 (단, 지자체 판단에 따라 3개월 유예가능)
 -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 (단,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타지역 거주 인정 가능)
 - 부정수급 등 그 밖에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 또는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▶ (기타규정)
 - 사업종료 후,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업장이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지급 가능
 - '2년 근무' 는 청년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,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'재직기간' 은 본 사업참여 기간 동안의 재직기간만을 산정하며, 사업참여 전 또는 사업종료 후의 재직기간은 '2년 근무'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
 - 사업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최대 3개월 간 유예가능 (단, 직·간접적 구직활동을 한 경우* 등)
 - * 구직공모 참여 및 채용 면접에 응한 경우,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, 창업준비 활동, 질병·부상 등으로 취·창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
 - '지역' 은 시·도 사업의 경우 해당 시·도, 시·군·구 사업의 경우 해당 시·군·구를 의미하나, 당초 '지역 내' 의 사업장이 주소지를 '지역 외' 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'지역 내' 로 유지되는 경우 지급가능함
 - 지자체장이 청년의 거주여건을 고려하여 타 지역 거주를 제한적으로 인정 가능함. 단, 이 경우 사업장의 주소지는 '지역 내' 에 위치하여야 함
 - 사업종료 후, 청년이 지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사업 지속여부(사업자등록, 사업장 확인 등) 확인하여 지급 가능

※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지급여부 판단

1. 의견수렴

- 1-1. 참여기업 또는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간담회 소통 네트워크 등을
반기 1회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노력
- 참여청년이 당초직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거나, 불합리한 처우 등 애로사항 여부 확인, 참여자 면담 및 의견수렴

2. 정기·특별점검

- 2-1.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 대상 분기별 정기점검 실시
- 2-2. 민원발생 또는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정기점검 외,
현장방문 또는 서면을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
- 특별점검은 사전고지를 원칙으로 하되,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함
- 2-3. 점검결과 시행지침 위반 또는 기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참여자의
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, 경고, 참여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의
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기타 취소사유(①참여기업이 부도·폐업·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, ②허위·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신청 또는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, ③더 이상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기타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)

3. 사후관리

- 3-1. 주최기관 및 주관기관은 사업참여자(기업 및 청년)에 대한 현황(매출, 고용, 사업만족도 등)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며, 참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